

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28 |
|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2001. 6.

제안자 : 산업경제위원장

□ 제안이유

국제화 시대에 우리도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우리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함 (안 제3조)
-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받을 경우 지역 여건, 행정 규모,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(안 제4조)
-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(안 제5조 제1항)
-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(안 제6조 제1항)
- 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,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음 (안 제6조 제2항)

- 자매결연 체결시는 가급적 도의회 의원의 입회하에 체결하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과를 통보함 (안 제6조 제6항)
-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 (안 제7조 제2항)

충청북도의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자매결연의 대상)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매결연의 제의) ①충청북도가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, 행정규모,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②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③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1. 면적·인구 및 행·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
2. 산업·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5. 역사적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
6.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

제5조(사전교류) ①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자료 및 의견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

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, 팸플릿 등 자료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강구한다.

③상호방문시에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,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, 학계,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.

제6조(자매결연의 체결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,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.

③자매결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리도에서 서명할 경우 : 도지사의 명의로 초청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송 하되 방문시 주요일정 등은 사전에 협의 결정하며 방문 기간 중에는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시찰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주요일정은 피 초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.

2. 외국자치단체에서 서명할 경우 : 방문일정은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를 사전에 정하여 방문계획을 통보하고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방문한다.

④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체재비를 부담하고 피초청자가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의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⑤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,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.

⑥자매결연 체결시는 가급적 도의회의원의 입회하에 체결하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과를 통보한다.

- 제7조(사후관리) ①도지사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.